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법적 검토

 집필자 장민선(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I. 들어가며	3
II.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관련 현행 법제 분석	4
1. 연혁	4
2. 주요 내용	9
3. 검토사항	16
III.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32
1.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청소년복지지원법령 개선방안	32
2. 지원 대상 누락 방지를 위한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선방안	40
IV. 결 어	42

청소년정책 리포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법적 검토



I 들어가며

- .. 2016년 5월 생리용품 가격 상승으로 일부 청소년이 신체에 유해한 대체용품을 생리대 대신 사용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자,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할 필요성에 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
- .. 이에 2016년부터 보건복지부 소관 인근 보건소를 통해 만 11세에서 만 18세인 의료급여, 생계급여 수급 여성청소년, 지역아동센터 등 시설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현물로 지급해오다가, 2017년에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할 근거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조에 마련됨
- .. 이후 2018년 청소년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로 업무가 이관되어 2019년 1월부터 기존의 현물 지급 방식에서 생리용품 바우처(이용권) 지급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며, 2022년 생리용품 지원 대상 연령이 만 9세에서 만 24세까지 확대되었음
- ..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현행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에 속하는 만 9세에서 만 24세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고 있음
- .. 이와 같이 생리용품 지원은 취약계층 여성청소년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다가 신청주의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으로 인해 자격에 해당함에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 이를 위해서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고, 미신청자에게 신청을 독려하거나 직권 신청을 하도록 하는 등 신청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 .. 지원 대상 확대 및 미신청자에 대한 안내 등을 위해서는 개인의 자산조사, 금융정보 등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 .. 따라서, 이하에서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현행 법령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음

II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관련 현행 법제 분석

01 연혁

(1) 법률 개정 연혁

1) 2017. 12. 12. 일부개정

-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생리대를 구입하지 못하여 비위생적인 물품을 사용하거나 생리 기간 중 등교나 외출을 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2017년 12월 12일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을 통해서 법 제5조(건강한 성장 지원)에 제3항을 신설함
- 이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여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함

2) 2021. 4. 20. 일부개정

- 2021년 4월 20일 일부개정을 통해서 보건위생물품이라는 용어를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 ‘생리용품’으로 바꾸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여성청소년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지원을 의무화**함과 동시에 생리용품 지원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 외에도 **신청 및 지급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청소년복지 지원법 [법률 제15210호, 2017. 12. 12, 일부개정]	청소년복지 지원법 [법률 제18101호, 2021. 4. 20, 일부개정]
<p>제5조(건강한 성장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질병 예방, 건강 교육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호자는 양육하는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0></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성별 특성을 반영한 청소년의 건강·체력 기준을 설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개정 2016.12.20></p> <p>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7.12.12></p> <p>④ 제1항에 따른 시책의 마련, 제2항에 따른 건강·체력 기준의 설정·보급 및 제3항에 따른 물품 지원의 기준·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7.12.12></p> <p>[제목개정 2017.12.12]</p>	<p>제5조(건강한 성장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질병 예방, 건강 교육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호자는 양육하는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0></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성별 특성을 반영한 청소년의 건강·체력 기준을 설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개정 2016.12.20></p> <p>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한다.<신설 2017.12.12, 2021.4.20></p> <p>④ 제1항에 따른 시책의 마련, 제2항에 따른 건강·체력 기준의 설정·보급 및 제3항에 따른 생리용품 지원의 기준·범위, 방법,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7.12.12, 2021.4.20></p> <p>[제목개정 2017.12.12]</p>

(2) 시행령 개정 연혁

1) 2018. 6. 5. 일부개정

-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5210호, 2017. 12. 12. 공포, 2018. 6. 13. 시행)됨에 따라,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하는 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의 가구원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연령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으로 정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직접 교부하거나 해당 물품의 이용권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

REPORT

2) 2022. 4. 19. 일부개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8101호, 2021. 4. 20. 공포, 2022. 4. 21. 시행)됨에 따라, 생리용품 지원 대상을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서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으로 확대함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938호, 2018. 6. 5, 일부개정]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593호, 2022. 4. 19, 일부개정]
<p>제3조의2(보건위생물품 지원의 대상과 방법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의 가구원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연령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이하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이하 “보건위생물품”이라 한다)을 지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4.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보건위생물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직접 교부하거나 보건위생물품의 이용권[보건위생물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을 교부할 수 있다.</p> <p>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 대상 결정 등 보건위생물품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p>	<p>제3조의2(생리용품 지원의 대상과 방법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의 가구원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지원한다.<개정 2022.4.1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4.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생리용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직접 지급하거나 생리용품의 이용권[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4.19></p> <p>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 대상 결정 등 생리용품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2.4.19></p>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938호, 2018. 6. 5, 일부개정]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593호, 2022. 4. 19, 일부개정]
<p>④ 제2항에 따라 보건위생물품 또는 보건위생물품의 이용권을 교부받으려는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에 필요한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6.5]</p>	<p>④ 제2항에 따라 생리용품 또는 생리용품의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여성청소년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해야 한다.<개정 2019.3.19, 2022.4.19></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에 필요한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6.5] [제목개정 2022.4.19]</p>

(3) 시행규칙 개정 연혁

1) 2018. 6. 12. 일부개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에 필요한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5210호, 2017. 12. 12. 공포, 2018. 6. 13. 시행)됨에 따라,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신청을 하기 위한 신청서 및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등에 대하여 정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2022. 4. 21. 일부개정

·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하는 보건위생물품의 용어를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맞게 생리용품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8101호, 2021. 4. 20. 공포, 2022. 4. 21. 시행)됨에 따라, 보건위생물품을 생리용품으로 용어를 정비함

<p>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142호, 2019. 8. 2, 일부개정]</p>	<p>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174호, 2022. 4. 21, 일부개정]</p>
<p>제7조의2(보건위생용품 신청 등) ① 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3조의2에 따라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이하 “보건위생용품”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보건위생용품 신청서에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p> <p>② 제1항에 따라 보건위생용품 지원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p> <p>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 및 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 결정·기각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p> <p>④ 제1항에 따른 보건위생용품 지원 신청서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결정·기각 통지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 및 별지 제5호의3서식을 각각 따른다. 다만,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을 따를 수 있다. [본조신설 2018.6.12]</p>	<p>제7조의2(생리용품 신청 등) ① 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3조의2에 따라 생리용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신청서에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 2022.4.21></p> <p>② 제1항에 따라 생리용품 지원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 2022.4.21></p> <p>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생리용품 지원 결정·기각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8.2, 2022.4.21></p> <p>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생리용품 지원 신청 또는 생리용품 지원 결정·기각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을 따를 수 있다. <개정 2022.4.21> [본조신설 2018.6.12] [제목개정 2022.4.21]</p>

02 주요 내용

(1) 지원 대상

-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조제3항에서는 지원 대상을 ‘여성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생리용품 지원의 기준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서는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지원대상 등인 사람 또는 그의 가구원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 2022년 4월 19일 시행령 일부 개정 전에는 지원 대상을 여성청소년 중에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연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11-18세의 여성청소년’으로 하였으나, 2022년 4월 19일 일부개정을 통해서 연령 범위를 삭제함으로써 ‘9-24세의 여성청소년’으로 대상을 확대함
- .. 현재 생리용품 지원 대상은 일정한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청소년임
 -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² 및 제5조의2³에 따른 지원대상자 또는 그 사람의 가구원
 - 연령기준 : 9-24세로서, 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24세가 끝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지원함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 법 제2조제10호에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5. 4. 20.] [제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5조로 이동 <2015. 4. 20.>]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신설 2011. 4. 12., 2014. 1. 21.> [전문개정 2007. 10. 17.] [제목개정 2014. 1. 21.]

3 시행규칙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의 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 7. 22., 2015. 12. 14.> [전문개정 2012. 6. 29.] [제목개정 2014. 7. 22.]

〈생리용품 지원 대상 자격기준〉

구분	법률 규정 내용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생계·주거·교육·의료급여 수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급여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하인 사람 • 주거급여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43 이하인 사람 • 교육급여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 의료급여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하인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가족: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서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부합하는 경우 • 청소년한부모가족 :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복지급여 지급기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조손가족: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외에도 부모의 사망 등으로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만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로서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와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가 출산지원시설을 이용한 경우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 또는 부로서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마친 자 <p>* 자세한 사항은 「2023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여성가족부고시 제2022-57호) 1. 2023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참조</p>

-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①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와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1호의 출산지원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1.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2.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3.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4.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
- ③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 또는 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2) 신청 절차

- 위의 기준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 본인 또는 부모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의 사정으로 지원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도 있음
 -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의 범위 : i)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 ii)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한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iii) 후견인, iv) 법정대리인, v) 부모, 가족, 친족, 법정대리인, 후견인이 없는 경우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사회복지시설장, 청소년복지시설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
 - 다만, 만14세 미만 청소년 본인이 신청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2호)에 법정대리인의 서명 필요
 - 청소년의 부모 이외의 신청권자는 청소년과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여성청소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나 앱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함
- 신청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 서식)에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함
- 이 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관계기관 보유 개인정보 확인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에 서명해야 함(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 서식에 포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신청을 받은 지자체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별도 제출해야 함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22. 4. 2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청소년 본인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집전화)	(이메일)	
	(휴대전화)		
대리 신청인	성명	관계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집전화)	(이메일)	
	(휴대전화)		
지원 대상 청소년 ※ 대리 신청인 작성	1.성명	1. 주민등록번호	
	2.성명	2. 주민등록번호	
	3.성명	3. 주민등록번호	

위에 기재한 내용은 사실이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생리용품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_____ (대리 신청의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대리 신청인의 범위	1. 부모, 가족,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2. 「민법」에 따른 후견인(법정대리인) 3. 그 밖에 여성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사람으로서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위탁기관의 위탁모 등	수수료 없음
첨부 서류	1. 청소년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명서 사본 및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및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관계기관 보유 개인정보 확인 동의서

이 신청서를 접수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등 관련 정보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본인(대리 신청인 포함)은 위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여성가족부, 사회보장정보원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번호의 처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및 제24조의2(주민등록정보 처리의 제한)에 따라 생리용품 지원 등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공합니다.

- 수집·이용·제공 목적: 생리용품 지원 및 관리
-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지원자격정보, 생리용품 지원 이력, 국민행복카드정보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회계서류 보존)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업무
 - 제공받는 자: 사회보장정보원, 국민행복카드사
 - 제공목적: 생리용품 이용권 생성 및 결제, 결제내역 송수신(SMS, 문자), 우편물 발송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생리용품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준수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만 14세 미만 청소년의 신청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서명 또는 인)

(필요 시) 법정대리인: _____

(서명 또는 인)

(3) 대상자 결정 및 통지

- 생리용품 지원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해야 함
 - 신청을 받은 지자체는 신청서류, 자격기준, 연령기준 확인하여 대상자를 결정함
-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생리용품 지원 결정·기각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함
 - 대상자 여부,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결정통지문 및 이용자 안내문을 서면 또는 문자서비스 등 활용하여 통지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통지하는 경우 공통서식을 활용할 수 있음
- 이용자 선정 결과 또는 지원 중지 등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4) 지원 방식

-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서는 생리용품 지원에 대해 현물 급여 또는 이용권 지급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생리용품 바우처(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적립되는 전자적 증표) 형식으로 지급됨
- 바우처는 지원 대상 결정 후 청소년 본인 또는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통하여 지급됨 : 월 1만 3천원 지급, 연 최대 15만 6천원 한도(2023년 기준)
 - 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상·하반기 나누어 6개월분 일괄 지원, 단 최초 신청 시에는 신청한 달부터 계산하여 지원함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관련 법령〉

청소년복지지원법	<p>제5조(건강한 성장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질병 예방, 건강 교육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호자는 양육하는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성별 특성을 반영한 청소년의 건강·체력 기준을 설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p> <p>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한다. <신설 2017. 12. 12., 2021. 4. 20.></p> <p>④ 제1항에 따른 시책의 마련, 제2항에 따른 건강·체력 기준의 설정·보급 및 제3항에 따른 생리용품 지원의 기준·범위, 방법,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p>제3조의2(생리용품 지원의 대상과 방법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의 가구원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지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4.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생리용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직접 지급하거나 생리용품의 이용권[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9.></p> <p>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 대상 결정 등 생리용품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9.></p> <p>④ 제2항에 따라 생리용품 또는 생리용품의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여성청소년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9. 3. 19., 2022. 4. 19.></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에 필요한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p>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p>제7조의2(생리용품 신청 등) ① 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3조의2에 따라 생리용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신청서에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8. 2., 2022. 4. 21.></p> <p>② 제1항에 따라 생리용품 지원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8. 2., 2022. 4. 21.></p> <p>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생리용품 지원 결정·기각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 8. 2., 2022. 4. 21.></p> <p>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생리용품 지원 신청 또는 생리용품 지원 결정·기각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을 따를 수 있다. <개정 2022. 4. 21.></p>
---------------	---

03 검토사항

(1)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검토사항

- 현재 생리용품 지원 대상이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 한정됨으로써 여성청소년 건강권 보장의 취지에서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논의됨
-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11-18세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가, 2022년 시행령 일부 개정을 통해 연령 기준을 삭제하여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9-24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서 지원 대상이 어느 정도 확대되었음
- 이들 취약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서 자격기준이 정해지고 그에 따라 수급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 법에서 생리용품 지원을 위한 대상자 자격 확인을 위해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면 되었음

- 그러나, 향후 지원 대상을 예컨대, 기준 중위소득 기준을 활용하여 확대할 경우에는 이 법 자체적으로 소득 조사 및 관련 금융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등의 근거를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게 됨
- 일반적으로 사회보장급여 또는 지원을 신청할 경우에 신청시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등의 제공에 대해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고, 급여의 제공 주체가 이러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금융회사등,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복지 급여의 신청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입법례〉

법률명	급여 신청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p>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① 지원대상자와 그 친족, 「민법」에 따른 후견인,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도사,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등(이하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라 한다)은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에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 관할 보장기관에도 신청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원대상자의 이용 편의,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유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회보장급여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이 아닌 보장기관에도 신청할 수 있다.</p> <p>②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p> <p>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직권 신청한 사실을 보장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p> <p>④ 보장기관의 장이 지정한 법인·단체·시설·기관 등은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지원할 수 있다.</p> <p>⑤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시 신청인 또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근거 법령, 제7조에 따른 조사의 목적, 조사 정보의 범위 및 이용방법 2. 제20조에 따른 신고의무 3. 제34조에 따른 정보의 보유기간 및 파기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신청 지원 및 고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7조(수급자격의 조사) ① 보장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 무자(배우자와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자격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아 조사하고 처리(「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의 처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사항 2. 소득·재산·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률명	급여 신청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p>②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신청인 또는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③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고 거주지 및 사실 확인에 필요한 관련 장소를 방문할 수 있다.</p> <p>④ 보장기관의 장이 제1항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법원행정처,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법인·시설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 법인·시설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⑤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⑥ 보장기관은 신청인 또는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를 두 번 이상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p> <p>⑦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금융정보 등의 제공</p> <p>제8조(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낸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보험정보”라 한다)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p> <p>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p> <p>④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p> <p>⑤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⑥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⑦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의 방법·절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법률명	급여 신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p>제21조(급여의 신청) ①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차상위자가 급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도 같으며, 이 경우 신청방법과 절차 및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 제23조 및 제23조의2를 준용한다.</p> <p>②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수급권자의 동의는 수급권자의 신청으로 볼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라 급여신청을 할 때나 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급여신청을 하는 것에 수급권자가 동의하였을 때에는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낸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p>④ 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 등이 급여를 신청할 경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신청한 사람이 급여에 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아니하도록 수급권자의 선정기준, 급여의 내용 및 신청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야 한다.</p> <p>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자에게 급여 신청의 철회나 포기를 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급여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⑦ 제3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에 따른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수급권자에게 보장기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2.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3.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육구 등 제28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및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의 결정 또는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조사를 관계 기관에 위촉하거나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의 고용주, 그 밖의 관계인에게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④ 보장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조사를 하기 위하여 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자동차·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출입국·병무·교정 등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p> <p>⑥ 보장기관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보장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⑦ 보장기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 결과를 대상으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되는 경우에는 전산 파일로 대체할 수 있다.</p>

법률명	급여 신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p>⑧ 보장기관은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검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면 급여신청을 각하(却下)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p> <p>⑨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p>
	금융정보 등의 제공
	<p>제23조의2(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21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3조에 따른 확인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법률명	급여 신청
장애아동복지 지원법	<p>제13조(복지지원의 신청) ① 장애아동 및 그 보호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 법에서 정하는 복지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22조에 따른 보육지원은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4를 따른다.</p> <p>② 제1항에 따라 복지지원을 신청할 때에 장애아동과 그 가구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개별 가구의 가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p>③ 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④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금융정보 등의 제공
	<p>제15조(금융정보 등의 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4조의 신청에 따라 신청자를 복지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2항에 따라 장애아동과 그 가구원이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장애아동과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복지지원 대상자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 사항을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장애아동과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p>
한부모가족 지원법	급여 신청
	<p>제11조(복지 급여의 신청) ① 지원대상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복지 급여 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한 지원대상자의 동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p>③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신청 방법·절차와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법률명	급여 신청
한부모가족 지원법	<p>제12조의2(복지 급여 사유의 확인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복지 급여를 신청한 지원대상자 또는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를 받고 있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급여 사유의 발생·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주거 등에 출입하여 생활환경 및 소득자료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원대상자의 고용주 등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p> <p>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국세·지방세, 토지·건물, 건강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 출국·입국,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의 입소·출소, 병무,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출입·조사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p> <p>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받은 자료와 그 밖에 알게 된 사실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p>
	<p>금융정보 등의 제공</p> <p>제12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복지 급여를 신청한 지원대상자의 급여 사유의 발생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p> <p>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복지 급여를 받고 있는 지원대상자의 급여 사유의 변경·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과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및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과 제공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조제3항의 생리용품 지원은 여성청소년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생리용품 지원의 자격 기준에 중위소득을 활용한 기준을 신설할 경우에는 신청시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고, 급여의 제공주체인 여성가족부장관이 이러한 동의 서면에 근거하여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 .. 한편,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하여 소득 기준 외에도 다른 법령상의 취약계층으로의 확대를 검토해볼 수도 있을 것임
- .. 현행 법령상 이용권이 지급되는 취약계층의 범위를 살펴본 결과, 에너지이용권이 발급되는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이 발급되는 산림복지소외자, 문화이용권이 지급되는 문화소외계층, 여행이용권이 지급되는 관광취약계층 등의 범위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 대상보다 넓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다만,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 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인 여성청소년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가 필요할 것임

법률명	취약계층	범위
에너지법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65세 이상, 영유아, 등록 장애인, 임산부 등이 속한 세대의 세대원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소외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소외계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자활급여수급자, 장애수당수급자, 장애아동수당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
관광진흥법	관광취약계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자활급여수급자, 장애수당수급자, 장애아동수당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

(2) 지원 대상 누락 방지를 위한 검토사항

- .. 이 법 시행령 제3조의2제4항에 따르면, 생리용품 또는 생리용품의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여성청소년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구조임

- 현행 법령상 지원 대상인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9-24세의 여성청소년 중에서 생리용품 지원 신청율이 7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⁴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만 신청하지 않은 미신청자에게 이 제도에 대한 안내를 통해 지원 신청을 독려할 필요가 있음
- 일반적으로 사회보장급여에 대해서는 보장기관은 지원이 필요한 국민이 급여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이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보장급여를 적절하게 제공받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음(사회보장급여법 제4조제2항)
- 이에 따라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때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그 동의는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으로 본다(사회보장급여법 제5조제2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조(기본원칙) ①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보장기관은 이에 필요한 안내와 상담 등의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지원이 필요한 국민이 급여대상에서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이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보장급여를 적절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 ⑥ (생략)

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① 지원대상자와 그 친족, 「민법」에 따른 후견인,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도사,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등(이하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라 한다)은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에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원대상자의 이용 편의,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유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회보장급여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이 아닌 보장기관에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②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 ⑥ (생략)

- 한편, 여성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지원은 생리용품 이용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함⁵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개념 및 관련 규정〉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이용권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 제2호에 따르면 “사회서비스이용권”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사회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된 증표를 말하는 것임

☑ 여기에서 사회서비스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⁶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그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법 제2조제6호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정의에 따르면 여성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지원은 사회복지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됨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르면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복지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인데, 사회복지사업은 제2조제1호 각목의 법률에 따른 복지에 관한 사업을 말하며, 같은조제1호퍼목에 ‘청소년복지지원법’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한 생리용품지원사업도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고, 그러한 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사회복지서비스에 해당함. 따라서, 이것은 사회서비스에 해당하므로, 생리용품 이용권도 사회서비스이용권에 해당함

☑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9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신청) 제1항에 따르면, 발급대상자, 발급대상자의 친족 또는 발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용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르면, 담당 공무원은 사회서비스 이용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발급 대상자에 대한 이용권의 발급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

☑ 제10조(신청에 따른 조사)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용권 발급 신청을 받으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에서 정한 발급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조사하게 하거나, 신청인에게 그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그러한 조사를 위하여 국세·지방세·토지·건물·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등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음

4 2021년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으로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여성가족부에 의해 ‘생리대 바우처’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지원 대상인 저소득층 청소년 24만 3천명 중 실제 신청자는 17만 3천명에 불과해, 7만 명은 여전히 ‘월경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한다. -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31081&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5 현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도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사업을 전자바우처 사업의 하나로 분류하고 있고, 뒤에서 살펴볼 에너지 바우처, 아이돌봄지원, 첫만남이용권도 전자바우처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음 -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view.do?p_sn=2 (2023. 12. 15. 최종검색)

-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3조(적용범위 등)에 따르면,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므로 생리용품 이용권에 대한 신청과 발급에 대해 청소년복지지원법령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서비스이용권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여성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 등이 생리용품 바우처를 신청하게 되면,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신청이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에 부합하는지 조사하게 하거나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국세, 지방세, 토지 등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 이용을 위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 요청도 할 수 있음
- 자격기준을 갖춘 여성청소년이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담당공무원은 생리용품 지원이 필요한 여성청소년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발급 대상자에 대한 이용권의 발급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임. 이 때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의하면 발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동의를 생략할 수도 있음
- 따라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이 신청하지 않은 경우 관할 지역 담당 공무원이 이용권 발급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임. 그밖에도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담당 공무원이 지원대상자를 발굴하는 방안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두번째 방안의 경우, 다른 사회보장급여에 대해서는 미신청자 등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을 통해 누락 대상을 파악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담당 공무원이 신청하는 소위 누락서비스 제도가 적용되는 것으로 파악됨. 여성청소년 대상 생리용품 지원에 대해서도 이러한 누락서비스를 적용할 경우 미신청자 발굴을 통해 신청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 이와 관련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 사회보장급여에 대해서는 2020년 기준 50여개 유형의 누락서비스가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여성가족부 제공 자료). 따라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대해서도 이러한 누락서비스가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전술한 바와 같이 사회보장급여에 대해서는 지원이 필요한 국민이 급여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누락서비스의 확대 적용이 필요함
- 이용권(바우처) 제도를 도입한 다른 법령의 관련 규정을 살펴본 결과, 이용권 발급 주체가 수급 자격 확인이나 자격 유지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가족관계 증명이나 국세, 지방세 등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6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서비스의 정의 규정은 제2조제4호가 아니라 제2조제6호임

〈다른 법령상의 이용권(바우처) 규정〉

법률명	조문 내용
관광진흥법	<p>제47조의5(여행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⁷으로 정하는 관광취약계층에게 여행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행이용권의 수급자격 및 자격유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족관계증명·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p> <p>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p> <p>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행이용권의 발급,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여행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행이용권의 지급·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여행이용권의 이용 기회 확대 및 지원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행이용권을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에 따른 문화이용권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이용권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p>

7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관광취약계층의 범위) 법 제47조의5제1항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 11. 30., 2023. 9. 2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 나.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다.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4.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관광 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법률명	조문 내용
문화예술진흥법	<p>제15조의4(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⁸으로 정하는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이용권의 수급자격 및 자격유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족관계증명·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p> <p>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p> <p>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이용권의 발급,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문화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이용권의 지급·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8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문화소외계층의 범위) 법 제1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소외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 11. 30., 2023. 9. 2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 나.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및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다.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4.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법률명	조문 내용
에너지법	<p>제16조의3(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의 신청을 받아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p> <p>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권의 수급자 선정 및 수급 자격 유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p> <p>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공급자, 그 밖의 에너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에너지공급자,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에너지 공급 현황 2. 에너지 이용 현황 3. 그 밖에 에너지이용권 수급 자격 기준 마련에 필요한 자료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9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에너지이용권의 수급자) 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 6. 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속한 세대의 세대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에 따른 수급자로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1) 65세 이상의 사람
 -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
 -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4)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부
 - 나.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에너지 이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속한 세대의 세대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가. 법 제16조의2제1호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난방유를 지원받는 경우
 -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 다.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연료비를 해당 연도에 지원받는 경우
 - 라. 삭제 <2023. 4. 18.>
 - 마. 「석탄산업법」 제29조제7호에 따라 연탄을 지원받는 경우

법률명	조문 내용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p>제24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을 산림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림복지소외자¹⁰ 2. 산림복지소외자의 친족 3. 산림복지소외자의 법정대리인 <p>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 등을 고려하여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p> <p>③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p> <p>⑤ 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평생교육법	<p>제16조의2(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아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p> <p>②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소외계층에게 우선적으로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¹¹으로 신청자의 요건을 정할 수 있다.</p> <p>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이용권의 수급자 선정 및 수급자격 유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 증명·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p> <p>⑤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평생교육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p> <p>⑥ 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이용권의 발급 주체가 소관 부처 장관인 경우(에너지법, 산림복지진흥에관한법률)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한 경우(관광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평생교육법)에도, 수급 자격 확인 및 자격 유지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 증명이나 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 등의 제공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 따라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의 주체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규정된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도 이용권의 수급자격 확인 등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직접 두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10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산림복지소외자의 범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8. 21., 2023. 3. 28., 2023. 6. 20.>

1.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3.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4의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5.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산림복지 혜택을 누리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11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4(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②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9., 2023. 9. 2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5. 그 밖에 가구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III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01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청소년복지지원법령 개선방안

- 현재 생리용품 지원 대상은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각호에 규정되어 있음. 만일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규정을 신설할 경우에는 같은 조 각 호에 추가하는 것이 체계상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구체적인 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에 관해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예컨대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7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 구성원이라는 기준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각호에 명시할 것인지, 구체적인 비율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할 것인지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0조의2(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및 복지지원) 제4항 등에서도 구체적인 비율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이 사안에서도 이와 같이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참조 입법례〉

법률	조문 내용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0조의2(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및 복지지원) 제4항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및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 대상자는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사람 중에서 재산정도 및 취업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이 경우 해당 비율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7조의5(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 기준 등) 제4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관리 및 의료비의 지원 대상은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의 기준 중위소득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하의 소득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제17조의4(청소년 한부모 건강진단의 대상 및 기준) 법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의 기준 중위소득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 현재 시행령 제3조의2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해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 소득 기준을 신설할 경우에는 자격 확인을 위해서 신청자의 소득에 대한 조사, 금융정보 제공 동의 등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을 것임
- 이 법에서와 같이 이용권을 통해서 비용을 지원하는 「아이돌봄지원법」에서도 일정한 소득기준을 갖춘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신청시 소득 재산 자료 등 제공에 동의하고, 발급주체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금융정보 등 제공 요청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이러한 규정은 신청자에게 일정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자신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동의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률 규정사항으로서,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도 지원 신청과 함께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체계상 적절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조는 건강한 성장지원에 관한 규정으로서, 해당 조문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기보다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신청시 금융정보 제공 동의 등의 규정을 따로 두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 따라서, 지원대상자 확대를 위한 법령 개선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해볼 수 있을 것임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현행	개정안
<p>제3조의2(생리용품 지원의 대상과 방법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의 가구원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지원한다. <개정 2022. 4. 19.></p> <p>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p> <p>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p> <p>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p> <p><신설></p> <p>4.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생리용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p>	<p>제3조의2(생리용품 지원의 대상과 방법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의 가구원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지원한다. <개정 2022. 4. 19.></p> <p>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p> <p>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p> <p>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p> <p>4.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사람. 이 경우 해당 비율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5.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생리용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p>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

현행	개정안
<p><신설></p>	<p>제5조의2(생리용품 지원의 신청)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생리용품을 신청하고자 하는 여성청소년과 그 가구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가구원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p> <p>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 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p> <p>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p> <p>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5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생리용품을 신청한 지원대상자의 급여 사유의 발생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p>

현행	개정안
	<p>상자가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p> <p>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지원대상자의 급여 사유의 변경·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를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과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p>

현행	개정안
	<p>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및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과 제공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

현행	개정안
<p>제7조의2(생리용품 신청 등) ① 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3조의2에 따라 생리용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신청서에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p> <p>〈각 호 신설〉</p>	<p>제7조의2(생리용품 신청 등) ① 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3조의2에 따라 생리용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득·재산 신고서 2.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서 3.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참조 입법례〉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가구의 소득수준과 거주 지역 및 부모의 취업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할 수 있다.

③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은 서비스의 종류, 해당 지역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권에 관한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이용권의 신청·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비용 지원의 신청) ① 보호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한 보호자 및 그 가구원의 동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 방법·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비용 지원을 신청한 자(이하 “비용 지원 신청자”라 한다) 및 그 가구원의 재산을 평가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비용 지원 신청자 및 그 가구원이 제22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아이돌봄 지원법

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조사·질문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용지원 신청자 및 지원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비용 지원 대상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비용 지원 신청자 및 지원이 확정된 사람의 주거,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제·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용 지원 신청자 또는 지원이 확정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비용 지원의 신청을 각하하거나 지원결정을 취소·중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질문의 범위·시기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⑤ 지원 대상에 대한 주민등록 주소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할 수 있다.

02 지원 대상 누락 방지를 위한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선방안

- 청소년복지지원법령에 따라 생리용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연령기준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음으로써 생리용품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담당공무원이 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는 여성청소년을 발굴하여 이들에게 생리용품 지원 제도에 관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대해서도 사회서비스이용권법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할 수 있는데, 그밖에도 여성청소년 대신에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음
- 현재 법률에는 여성청소년 본인이 신청하도록 하고, 부모나 법정대리인, 주 양육자 등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지원대상자를 누락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청소년 가까이 있으면서 청소년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들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 이에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5조제1항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에 관한 조문을 참고하여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조제3항 다음에 제4항을 신설하여 여성청소년 본인 외에도 청소년지도자, 교원, 사회복지사, 담당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는 당사자인 여성청소년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안을 제시함(제1안)
- 이러한 신청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 외에도 지원대상자를 발굴함으로써 그에게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의 누락서비스 안내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권(바우처)에 관한 다른 법령의 규정을 참고하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발급 주체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급자 발굴, 수급 자격 확인, 자격의 적정성 유지를 위해 가족관계 증명, 국세 및 지방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제2안)으로 제시함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

현행	개정안
<p>제5조(건강한 성장지원) ①~② (생략)</p> <p>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한다.</p> <p>〈신설〉</p>	<p>제5조(건강한 성장지원) ①~③ (생략)</p> <p>〈제1안〉</p> <p>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여성청소년이 지원으로부터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여성청소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 2.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4.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p>〈제2안〉</p> <p>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발굴, 지원 대상자의 선정 및 자격 유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 증명·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⑤ 제1항에 따른 시책의 마련, 제2항에 따른 건강·체력 기준의 설정·보급 및 제3항에 따른 생리용품 지원의 기준·범위, 방법,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IV
결 어

- .. 여성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지원은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원이 필요한 여성청소년에게 빠짐없이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법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 현재 지원 대상이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게만 한정되어 있다보니 생리용품 지원이 필요함에도 그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여성청소년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바,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 단위로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 합산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소득에 대한 조사, 관련 금융정보의 확인을 위한 제공 동의 등의 절차가 요구됨
- .. 따라서, 시행령의 개정과 함께 생리용품 지원 신청시 소득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과 시행규칙의 개정도 필요할 것임
- .. 한편, 생리용품 지원은 여성청소년 본인 또는 부모 등의 신청에 의해서 각 지자체에서 그 자격을 확인함으로써 생리용품 이용권의 형태로 지급되는 것인데, 이와 같이 신청을 요건으로 하다보니 관련 정보의 부재로 인한 미신청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보 제공 및 신청 독려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 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것 외에도 여성청소년의 가까이에 있는 청소년지도자, 교원, 사회복지사 등도 신청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과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당사자를 발굴하기 위한 누락서비스 적용을 위해 필요하다면 관련 기관에 정보 제공 요청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함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 리포트

2023 VOL. 0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법적 검토

| 2023년도 | 제2호 |

발행일 2023년 12월 15일

발행처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